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 - 1778호

-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

2023년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18.

인 천 광 역 시 장

1. 용자규모 : 100억원

2. 용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①음식점업(56) ②도소매업(45~47)** ③교육서비스업(85),
④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⑤개인 서비스업(95~96)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용자내용

- 용자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용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4. 용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용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무점포 소매업

5. 용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7. 31.(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 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어려워 방문예약을 할 경우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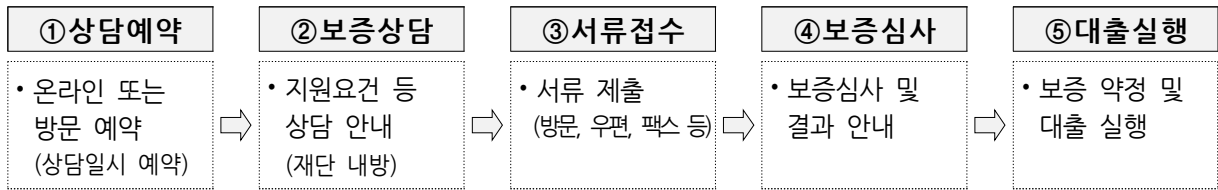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구 분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주 소
남동지점	(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부평지점	(부평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서인천지점	(서구·강화군)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남부지점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계양지점	(계양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층
중부지점	(중구·동구)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7. 지원절차



8. 상담 및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별첨】 보증제한업종

보증제한업종 [1/2]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보증제한업종 [2/2]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